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3호서식] <개정 2012.1.19>

(앞 쪽)

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	□ 측 정 기 기 □ 폐수배출시설 □ 수질오염방지시설	개선완료보고서	처리기간
제 호			4일 (검사기간 제외)

보고인	① 사업장명		
	② 대 표 자		
	③ 주 소	(전화번호:)	
④ 사업장 소재지		(전화번호:)	
⑤ 사업종류		⑥ 주생산품	

⑦	□측 정 기 기 □폐수배출시설 □수질오염방지시설	의	□부적정운영 시작일 □수질오염물질 채취일	년 월 일
⑧	□측 정 기 기 □폐수배출시설 □수질오염방지시설	의	□가동중단기간 □위탁처리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
⑨	□측 정 기 기 □폐수배출시설 □수질오염방지시설	의	□개선완료일 □재가동개시일	년 월 일

⑩ 부적정 운영 개선명세	측정기기명 또는 시설명	규격	수량	개선내용

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0조제2항에 따라 □ 측 정 기 기 □ 폐수배출시설 □ 수질오염방지시설 의 개선을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자 (서명 또는 인)

시・도지사, 시장・군수・구청장, 유역(지방)환경청장 귀하

※ 구비서류: 없습니다.	수수료 없 음

210㎜×297㎜[신문용지 54g/㎡(재활용품)]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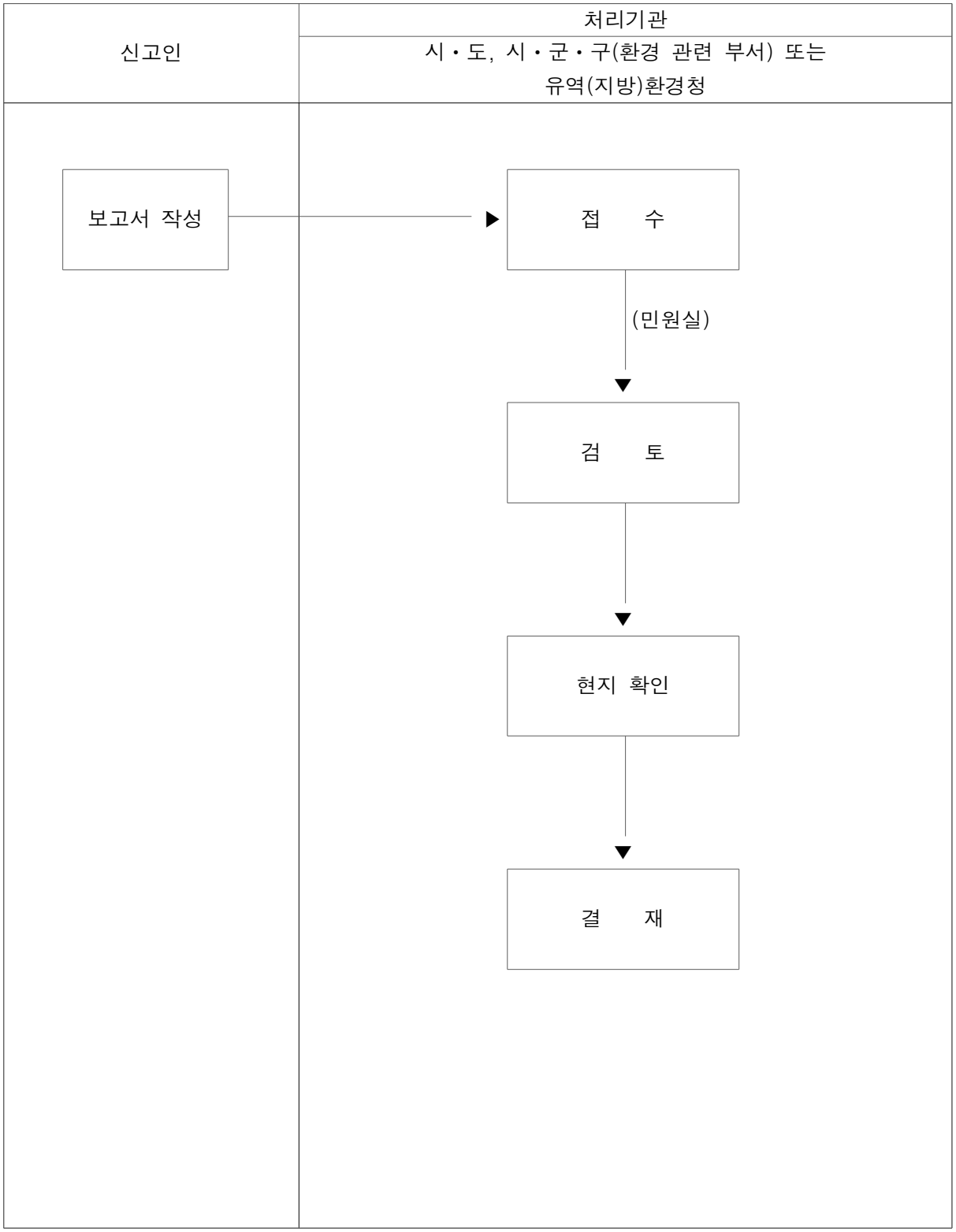
※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